

의안번호	제2923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발의자	허옥희 의원 등 4인
발의연월일	2025. 3. 21.

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(허욱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2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 의 자 : 허욱희, 최두임, 김향숙,
김희태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험 가입 및 선정(안 제3조)
- 나. 보험 가입 공고(안 제6조)
- 다.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14호

- 예고기간: 2025. 3. 21.(금) ~ 2025. 3. 27.(목) [6일간]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전동보조기기”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.
3. “전동보조기기 보험”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·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 가입 및 선정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

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4조(보험 보장기준) 보험의 보장내용,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.

제5조(보험료 납부)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.

제6조(보험 가입 공고)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, 보상 범위,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 청구)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금 지급 등) 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1.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

2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

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
보험약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“법정대리인등”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0. 5. 27., 2015. 6. 22., 2017. 2. 8.>

② 삭제 <2017. 2. 8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2. 8., 2017. 12. 19.>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20조(보호자 범위) 법 제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”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,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6. 6. 28., 2017. 7. 24.>

□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보조기기”란 장애인등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을 향상·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·기구·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